

5 교육

(1) 학교 교육

일본의 교육은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을 기본적인 흐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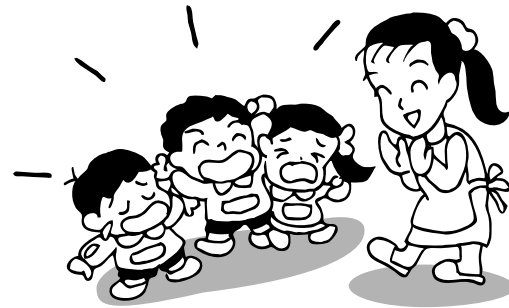
이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고 하여, 전원 입학, 졸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은 원칙적으로 희망자가 선발시험을 치르고 입학합니다.



(2) 보육소

보육소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이 부족한 아동을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아동은 가정을 중심으로 보호자의 애정을 받고 자라는 것이 본래는 좋지만, 보호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질병 때문에 그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정에 대신하여 보육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가정 상황의 아동이라도 입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보육할 수 없는 정도에 의해, 혹은 보육소의 정원에 여유가 없을 때 등은 입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입소 기준

아동의 보호자 중 어느 한쪽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여 아동을 보육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동거의 친족 그 외의 사람이 아동을 보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입소할 수 있습니다.

- 가. 낮에 노동하는 것을 일상으로 하고 있다.
- 나. 임신 중이든지, 혹은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
- 다.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 혹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 라. 동거의 친족을 항상 간병하고 있다.
- 마. 지진재해, 풍수재해, 화재, 기타 재해의 복구에 임하고 있다.

② 입소 수속

가. 아동 1명에 대해 1장의 입소신청서(입소희망 보육소)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입소희망 보육소에 제출한다.

나. 이 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 급여 소득자는, 원천징수표, 재직증명서
- 사업 소득자는, 확정신고의 부분
- 가정에서 부모, 조부모가 보육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
- 상근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 재직증명
- 자영업, 농업의 경우 취업증명(지구의 민생위원회에 기입해 받는다)
- 병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전년도 원천징수표, 재직, 취업증명서는 아동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고 있고,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전원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③ 심사·결정

아동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보육을 받을 상태가 높은 아동으로부터 순서대로 입소 결정됩니다.

④ 보육료

전년도분의 소득세액, 시민세액 등에 의해 결정합니다.

※문의처 시청 복지부 육아지원과 육아지원계
전화 237-1161 내선 3584~5

(3) 초·중학교

외국 국적의 아동·학생은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취학할 의무는 없으나, 코후시에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코후시의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합니다.

- 코후시에 외국인 등록을 할 것.
- 보호자의 국적, 연령, 아동·학생과의 관계가 뚜렷할 것.
-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는 연령일 것.
- 부모, 본인에게 취학에 대한 강한 요망이 있을 것.
- 등교, 하교, 일상생활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책임을 질 것.

○입학처의 학교는 거주지 학구의 학교로 정해집니다. 또한, 연령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취학합니다.

○수속은 시청 유키회관(遊亀会館)의 교육위원회 학사과에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행해 주십시오.

모르는 사항은 시청 교육위원회 학사과(전화 223-7322)로 문의해 주십시오.